

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공고

경북 소공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며, 현장진단을 통해 안전설비 개선, 교육·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.

2025년 8월
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

1. 신청자격

- 가. 소 공 인: 제조업(업종코드 C10~C34) 영위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※ (참고사항)에서 확인
- 나. 사 업 장: 경상북도 소재일 것
- 다. 제외대상: 도박·사치업종, 휴·폐업 및 부도, 세금 체납,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기업, '25년 창업기업, 유사사업 수혜 이력 기업 등

2. 지원내용

※ 단순 장비 교체, 자산 취득 목적 등은 지원 불가

구분(모집)		지원내용	지원금 (국비: 70%)	자부담 (기업: 30%)	비고
안전환경 조성 (총 5개사 내외)	중대재해	- (필수)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·컨설팅 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안전장비 지원 ※ 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*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	630만원 이하	270만원 이상	공급가액 (VAT별도)
	일반	- (필수)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·컨설팅 -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안전장비 지원	350만원 이하	150만원 이상	

*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(50만원 미만)

** 유사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(현장평가 후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복성 확인 후, 최종 선정결과 안내 예정)

*** 기본심사 및 현상실사에 따라 지원항목에 대한 지원내용(지원 수)이 변경 될 수도 있음

3. 접수방법

가. 신청기간: 2025. 8. 12.(화) ~ 8. 29.(금) (선착순 마감)

※ 선착순 서류 접수 후 서류 및 현장평가 등 진행 예정으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음

나. 접수방법: 홈페이지 접수 (<http://www.gbtp.or.kr>)

- 제목 및 파일명: 경북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_기업명_중대재해 또는 일반

다. 사업정보 확인: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→ [사업안내 \(http://www.gbtp.or.kr\)](http://www.gbtp.or.kr)

4.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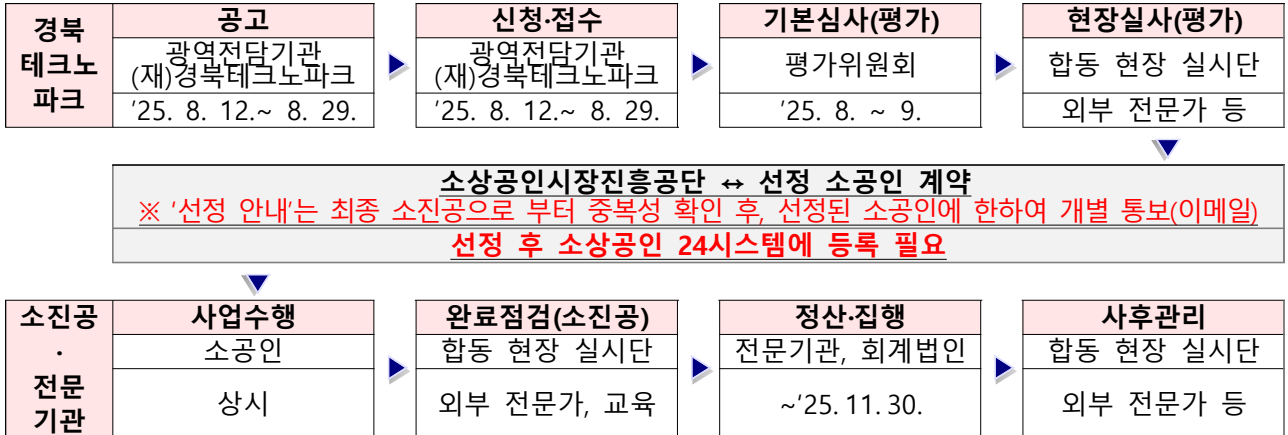
* (신청양식) 체크리스트와 동일함.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연번	제출서류	확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필수 서류	1	<input type="checkbox"/> 체크리스트 등 (서식1~5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	2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*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법인 사업자의 경우 : '법인' 및 '대표자'명의 서류 모두 제출	<input type="checkbox"/>
	3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업종코드 확인서 ※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(참고사항) P10에서 확인 * 주업종코드 확인서 우측하단(여분공간)에 [인감 또는 자필서명 必] *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 [서식7](해당시)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단, 2025년 창업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사업신청 불가	<input type="checkbox"/>
	4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 : 제조업 必)	<input type="checkbox"/>
	5	<input type="checkbox"/>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서류 (택 1: 3년간) ▶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▶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▶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	<input type="checkbox"/>
	6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	<input type="checkbox"/>
	7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▶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*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<input type="checkbox"/>
	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(택 1: 12개월분)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▶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
8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기업 견적서 등 ▶ [서식6]공급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* 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선정 후 견적서 재 요청 할 수 있음. ▶ [서식8](해당시) 폐기완료확약서	<input type="checkbox"/>	
선택 서류 (해당시)	9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점증빙서류 *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(공고문) P.4 가점항목 참고	<input type="checkbox"/>

* (참고) 발급신청 사이트

발급서류	발급처	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
- 사업자등록증명원 - 표준재무제표증명 - 부가가치세표준증명 - 부가가치세신고서 -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- 국세/지방세납세증명서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	www.hometax.go.kr 국번없이 126
- 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	http://sminfo.smba.go.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	국민건강보험공단	www.nhis.or.kr 1577-1000

5. 추진절차



가. 선정평가 : 기본심사* → 현장실사(평가) → 중복성확인(소진공) → 최종선정

- (기본심사) 소공인, 필수서류 확인 및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
- 분야별 42점(만점의 60%, 가점 5점 포함) 미만 시 탈락 처리

<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>

항목	심사 지표	배점
기본 심사 (70점)	·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	20
	·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	20
	· 업종별 산업재해율*	20
	· 상시근로자수	10
가점 (5점)	· 풍수해보험가입자, 안전사고 유경험업체,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	5

*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(업종별, 규모별 요양재해율) 참고

- (현장실사)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, 기대효과 등 평가,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결정 * 현장실사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-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, 유의사항 등을 안내

<안전환경조성 현장실사 지표>

평가항목	현장실사 지표	배점
현장실사 (30점)	·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	15
	· 기대효과	15

- (선정 안내) 최종 소진공으로 중복성 여부 확인 후,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개별 통보(이메일) * 선정 후 소상공인 24시스템에 등록 必

나. 협약 및 사업수행

- **(선정 소공인 협약)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↔ 선정 소공인 계약
- **(사업수행)**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,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된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

<공급업체 선정 기준>

구분	세부기준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· 상시근로자 1인 이상(사업주 포함 2명) 업체 ·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비속(자제)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
공사·개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(전문)건설업 등록증 -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

- **(완료점검)**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실사 및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
 - 선정소공인은 공급업체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, 정산서류*(붙임3참고사항)를 준비하여 제출 * '전문기관'에서 정산서류 작성지원 예정
- **(지원금 정산)** 선정 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, 전문기관이 공급업체로 국고보조금 지급
- **(사후관리)** 사업수행 및 정산완료 후,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검수, 지원 후 성과,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

다. 가점사항(최대 5점)

구분	가점항목(점수)	가점기준	제출서류
1	풍수해보험 가입자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'풍수해보험' 가입 소공인 *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(소상공인 보험)
2	안전사고 有경험 업체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,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 승인을 받은 업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(정부24, 근로복지공단)
3	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3년 이내,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급여명세서 상 "건강검진비" 명시 필수

*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여부 검토

**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, 증빙자료(제출자료) 미제출 시 불인정

6. 문의처

구 분	담 당 자	문 의
사업 신청·접수 문의	경북테크노파크 (클린제조분야)	054-339-3352 054-339-3353 054-339-3301

7. 유의사항
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**신청접수 완료(제출) 이후 수정 불가.**
-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,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, 이로 인한 불이익(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)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음. 단,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여부 판단은 경북테크노파크 및 공단에 있음.
- 신청서, 현장사진,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,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(담합)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함.
-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선정된 소공인은 **전문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**하여야 함.
-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,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**10일 이내로**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.
-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당해 연도 내 지자체·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.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,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.
- 단,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,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, 별도 지원 가능(단, 사업장소재지·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)